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10. 27.(금) 06:00 < 10.27.(금) 석간 > 배포 2023. 10. 26.(목)

무역위, 탄소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강화방안 논의

- 국내기업의 무역구제를 위해 환경준수비용을 산업피해율 산정에 적용

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(EU),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탄소배출 관련 환경규제*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학계, 로펌, 회계법인,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심층세미나를 10월 27일(금) 개최하였다고 밝혔다.

* 유럽연합(EU)는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전환기간('23.10.1.~'25.12.31.) 시행으로 수출기업은 탄소배출량 보고의무, 프랑스는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 개편('23.10.10.)

무역위원회는 최소부과원칙*하(下)에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산업피해율 산정에 환경 관련 비용도 반영하여 무역구제의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, 앞으로 국내기업들이 환경비용 적용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.

* 최소부과원칙(Lesser Duty Rule) :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덤핑률과 산업피해율 중 낮은 율로 부과

금번 세미나에서 환경투자비용 및 탄소배출 관련 비용에 대한 과거발생 자료의 객관성 확보, 미래비용의 합리적인 추정 등 국내생산자가 환경비용을 산업피해율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.

아울러, 최근 산업피해 조사쟁점 및 대법원 판례, 반덤핑규범과 인과관계, 미국의 산업피해조사 쟁점, 유럽연합(EU) 무역구제제도 사례분석 등 반덤핑 규범의 실제 운영 시 제기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

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“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준수비용도 산업피해율 산정시 국내기업들이 실제 적용하여 무역구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	책임자	과 장	한상덕 (044-203-5860)
		담당자	사무관	김준철 (044-203-586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1 **2023년 무역구제학회 심층세미나 개최**

□ 세미나 개요

○ (주제) 반덤핑규범의 운용과 진화 : 환경비용과 반덤핑규범

○ (일시/장소) 10.27(금) 10:30~18:00 / OneIFC 본관 31층 회의실(여의도, White&Case)

○ (참석자) ❶<무역위> 상임위원, ❷<학회> 김대원 교수(회장), 최원목·조영진 교수(부회장) 등 25여명

□ 세부 프로그램

구분	시간	발표 주제
개회	10:30	
제1부	반덤핑협정의 기초 (사회 : 김상만 덕성여대 교수)	
	10:30~11:00	**[발표 1]** 반덤핑규범의 회계학 ◈ (발표자) 이장완 회계사 (한국코너스톤 어드바이져)
	11:00~11:30	**[발표 2] 환경비용의 산업피해율 산정상 쟁점** ◈ (발표자) 정선호 회계사 (포스코)
	11:30~12:00	**[발표 3]** 반덤핑규범의 경제학 ◈ (발표자) 서정민 교수 (숭실대)
점심	12:00~13:15	
개회	13:15~13:30	**[개회사] 김대원 무역구제학회장(서울시립대 교수)**
		[환영사] 강성진 변호사(White & Case)
		[축 사] 천영길 상임위원(무역위원회)/포토타임
제2부	반덤핑협정의 운용 (사회 :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)	
	13:30~14:00	**[발표 2]** 한국의 GVC상 위치와 덤핑마진 왜곡현상 ◈ (발표자) 심종선 회계사 (삼정KPMG)
	14:00~14:30	**[발표 3]** 최근 산업피해 조사쟁점 및 대법원 판례 고찰 ◈ (발표자) 정동원 변호사 (법무법인 화우)
	14:30~15:10	**[발표 4]** 반덤핑규범과 인과관계 ◈ (발표자) 조영재 변호사 (법무법인 광장)
	15:10~15:30	토론 및 휴식
제3부	반덤핑협정의 진화 (사회 : 조영진 이화여대 교수)	
	15:30~16:00	**[발표 1]** 미국의 산업피해조사 쟁점 ◈ (발표자) William Moran (White & Case)
	16:00~16:40	**[발표 2]** EU 무역방어제도(TDI) 사례 분석 ◈ (발표자) 김진우 (ReedSmith, 브뤼셀)
	16:40~17:10	**[발표 3]** 반덤핑협정 심사기준 ◈ (발표자) 허난이 (법무법인 광장)
	17:10~17:40	**[발표 4]** 반덤핑조치의 국내사법심사(미국) ◈ (발표자) 김지은 변호사 (법무법인 태평양)
	17:40~18:00	토론
폐회	18:00	**폐회사 : 이장완 회계사(부회장)** / 만찬

붙임2 최소부과원칙下 산업피해율 산정

□ 최소부과원칙下 최종 덤핑방지관세율

○ 최종 덤핑방지관세율은 확정 덤핑률 수준을 상한선으로 하되, 국내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세율 수준을 의미하는 산업피해율은 덤핑률과 동일하거나 혹은 높거나 낮을 수 있음

- 확정 덤핑률 > 산업피해율 : 산업피해율만큼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
- 확정 덤핑률 ≦ 산업피해율 : 덤핑률만큼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

□ 산업피해율 산정

○ 일반적으로, 덤핑수입이 국내생산품가격의 인하 또는 상승을 억제한 경우

• $\text{산업피해율} = \frac{\text{국내생산품 목표판매가격} - \text{수입품판매가격}}{\text{CIF수입가격}} \times 100$

• $\text{목표판매가격} = \frac{\text{단위당 제조원가} + \text{단위당 판매관리비} + \text{단위당 기타비용}}{1 - \text{목표이익률}}$

○ 기존에는 적정이익률(적정판매가격)로 한국은행의 해당산업 평균 영업이익률 통계를 주로 활용했으나,

○ 새로운 목표이익률(목표판매가격) 산정시('22.6월 고시개정)에는 덤핑조사 대상국으로부터의 상당한 덤핑수입 증가 이전의 이익수준, 투자·연구·환경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무역구제조치 실효성 강화

- 환경비용을 목표이익률 또는 단위당 제조원가(또는 기타비용)에 가산하여 국내생산품 목표판매가격을 산정

• 예) 목표이익률 = 상당한 덤핑수입 증가이전의 영업이익률 + 환경비용 추가 이익률